

건축공사 일반시방서

공사명 :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개보수 공사

2019년 11월

순천제일대학교

- 목 차 -

◎ 건축시방서

- 건축개요
- 제 1장 총 칙
- 제 2장 가설공사
- 제 3장 타일공사
- 제 4장 방수공사
- 제 5장 목 공 사
- 제 6장 흙통공사
- 제 7장 금속공사
- 제 8장 미장공사
- 제 9장 창호공사
- 제 10장 유리공사
- 제 11장 도장공사
- 제 12장 수장공사
- 제 13장 철거공사

1. 건 축 개 요

1-1 공 사 명 :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개보수 공사

1-2 공사위치 :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산9-3번지의 72필지 (비봉관)

1-3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0일간

1-4 공사개요 : 비봉관 지하1층 일부 개보수

제 1 장 총 칙

1-1 적용범위

본 시방서와 국토해양부 발행 표준시방서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서 명시된 범위로 함.

1-1-1 본 특기시방서

1-1-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

1-1-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, 감리자,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.

1-2 관련법규 적용

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.

1-3 감독관

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,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.

1-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

1-4-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, 그의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WING MAN(시공도 설계기사)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,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-4-2 하도급자 선임

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 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
1-4-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.

1-5 공사용 전력 및 용수

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,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
1-6 의의 및 임의시공

1-6-1 본 공사중 건축, 토목, 기계설비, 전기설비, 통신설비,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.

1-6-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.

1-6-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,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,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.

1-7 경미한 변경

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. 이때,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1-8 공정 및 시공계획서

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,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, 서류,

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.

1-9 시공도

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, 매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.

1-10 재료사항

1-10-1 관급자재

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.

1-10-2 재료일반

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-10-3 견본제출

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-10-4 검사

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.

1-10-5 시험

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항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-10-6 공시체

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,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.

1-10-7 시험규준

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(KS)을 기준으로 하고,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지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.

1-10-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으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.

1-10-9 시험용 기구비치

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.

1-11 시공검사

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,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.

1-12 제출사항

1-12-1 공사보고

공사의 진척, 노무자의 취업, 재료의 반입 및 반출,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-12-2 공사사진

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, 장소,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.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" * 4"로 한다.

1-13 대외수속

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(감리자)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,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.

1-14. 공사장 관리

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, 기능공, 인부,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, 안전관리 및 보안,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.

1-15 공사의 중지

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.

1-15-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.

1-15-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,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.

1-15-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.

1-15-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.

1-15-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.

1-16 도급자의 경비부담

1-16-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.

1-16-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.

1-16-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.

1-16-4 단지 안내 표지판.

1-16-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.

1-17 청소 및 원상 복구

1-17-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,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.

1-17-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.

1-18 준공도 작성

도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-19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.

1-20 설계도 검토결과 이상유무

1-20-1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의한 당해 공사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1-20-2 계약후 14일이내에 보고가 없을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2 장 가 설 공 사

2-1 일반사항

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-2 현장정리 청소

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.

2-3 공사용수, 임시전력가설

임시전력가설,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.

2-4 재해방지

2-7-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, 근로안전관리규정, 산재보험법, 소방법,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.

2-7-2 낙하물 방지망은 착수와 동시에 시설하여야 하며 기존건축물 철거 및 본공사 시공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.

2-7-3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.

제 3 장 타 일 공 사

3-1 일반사항

3-1-1 재 료

1)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재질은 KS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형성 및 색상등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도면참조)

- 자기질 타일 : 화장실 바닥 - 200 X 200 X 8T

3-1-2 붙임 모르터

1)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.

2) 모르터 배합은 표준배합(용적비)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.

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	시멘트 : 모래(용적비) 1:3
압착모르터	" 1:2
줄눈모르터	" 1:1
크링카타일 및 바닥타일	" 1:2

3) 타일을 붙일 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(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는 동등이상)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.

4) 3MM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(KSL5204)를 사용한다.

3-2 시 공

5-2-1 줄눈 나누기

1)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세분할 도면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.

2) 문틀주위, 돌립대, 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루리 줄눈나비는 10M/M정도로 한다.

3)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,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.

4)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5)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6)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.

타일구분	외장용벽돌형대형	외장용 소형	내장 대형	소형
줄눈나비	6-9	6	6	3

단위(M/M)

3-2-2 내장 바닥 타일 붙이기

1)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하며, 크링카타일은 들어간 줄눈으로 한다.

2) 시멘트 풀을 2m/m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들기며 붙인다.

3) 방수 보호콘크리트 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을 만든다.

- 4)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몰탈 두께는 2m/m정도의 시멘트풀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기며, 기준대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.
- 5) 필요에 따라 몰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 나비도 몰매지고 세로 가로 줄바르게 붙이되 뒤틀림,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.
- 6)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-8M²를 표준으로 한다.
- 7)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-24M²내외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.

3-2-3 내장타일

- 1) 벽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벽타일은 천정, 바닥,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.

3-2-4 외장타일 붙이기

- 1) 타일 붙임은 압착 공법으로 한다.
- 2)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지면에서 20CM이하까지 타일을 붙인다.
- 3) 타일의 박리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한다.

3-2-5 신축줄눈

신축줄눈은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이질 바탕의 접합부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한 부분,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/M간격을 두어야 한다.

- 3-2-6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과기를 하고 타일 표면을 충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.

3-2-7 보 양

- 1) 외부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.
- 2) 기온이 2℃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. 시공후 4시간이내에 5℃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보양하고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용한다.
- 3)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.

3-2-8 청 소

- 1)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형짚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땀 후 줄눈을 교정한다.
- 2)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, 몰탈 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형짚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으로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.
- 3)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 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 내어야 하며 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대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다.

제 4 장 방수 공사

4-1 액체방수 : 화장실 바닥

우레탄방수 : 옥상

4-2 액체방수 및 우레탄방수

4-1-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, 건조시기를 보아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.

4-1-2 방수재는 아래 3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.

1) 방수용액 도포 :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도포시킨다.

2) 방수시멘트 폼칠 : 시멘트,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폼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칠한다.

3) 방수모르터 바름 : 시멘트, 모래,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밀바름층에 바른다.

4-1-3 방수층의 공정

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,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.

방수층의 층수

접수, 층수		종 별	1 종	2 종
		1	P1	P1
방수층	2	L	L	
	3	P2	P1	
	4	M	L	
	5	P1	P2	
	6	L	M	
	7	P2	..	
	8	M	..	
	9	
	10	
	11	
	12	

(주) L : 방수용액 도포 P1 : 방수 시멘트 묽은폼칠

M : 방수 모르터 바름 P2 : 방수 시멘트 된 폼칠

제 5 장 목 공 사

5-1 일반사항 (각종목재의 함수율기준)

5-1-1 구조 및 바탕재 : 18% 이하

5-1-2 수 장 재 : 15% 이하

5-1-3 특수 마감재 : 13% 이하

5-2 수장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, 형상, 치수, 색상,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흙통 공사

6-1 흙 통

6-1-1 선 흙 통 : 45° 곡관 (Ø100용) SST선흙통 및 250*250장식흙통

제 7 장 금 속 공 사

7-1 천정재, 안전난간

7-2 천정재 - SMC돛천정재

7-3 스텐레스 안전난간 - 도면상세규격에 의함

제 8 장 미 장 공 사

8-1 일반사항

8-2 미장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.

8-3 바닥콘크리트면 : 50T 몰탈

8-4 실별마감재료 : 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 참조

8-5 모든 창호틀에는 충전몰탈로 충전하여 양생후 창호를 설치할 것.

제 9 장 창 호 공 사

9-1 플라스틱창호 : 240mm 동등이상 미서기창.

9-2 단열알루미늄도어

9-3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창호 (KS 표시품) - 도면 및 내역서 참조.

9-3-1 미서기 창 : 240mm 동등이상 플라스틱-BAR

9-3-2 플라스틱 창호의 규격, 재질, 기타 제반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.

9-4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

9-5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의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9-6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.

제 10 장 유 리 공 사

10-1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, 형상,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.

-THK 22mm 칼라복층유리(5+12+5)

-THK 22mm 투명복층유리(5+12+5)

10-2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,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.

10-3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
10-4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(세팅블럭, 개스킷, 스페이서 등)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, 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1 장 도장공사

11-1 정별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.

11-2 도장 회수

11-2-1 유성페인트 (1급) : 2회

11-2-2 친환경수성페인트 (1급) : 2회

11-2-4 세라민페인트 : 2회

11-3 도료의 제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한다.

11-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.

11-5 눈,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때, 먼지가 발생할 때, 상대습도가 90%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.

11-6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℃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.

다만,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.

11-7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.

11-8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.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.

11-9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 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.

제 12 장 수 장 공 사

12-1 비닐시트

12-1-1 재 료

- 1) 비닐시트는 KSM-38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.
- 2) 규격 : 두께 2.0mm
- 3) 색채 :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색채 및 문양.
- 4) 접착제 : PVC계 강력접착제는 비닐시트의 제조업자의해 당 제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.
- 5) 제품은 비닐시트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.

12-1-2 시 공

- 1) 비닐시트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, 반장 이하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.
- 2) 시멘트 몰탈 시공후 15일 정도 양생후 시공한다.
- 3)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(함수율 10%이내)
- 4) 붙이기는 각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깔며 문틀옆, 기둥주위, 검사구 둘레, 장선박스주위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나지 않게 한다.
- 5) 붙이는 면에는 강력접착제를 얼룩이 없게 도포하고 건조상태로 보아 분할도에 의해 타일을 깎는다.
- 6)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, 두드러지거나, 턱지지 않게 한다.
- 7) 붙친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신나등으로 닦아내고 톨라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않게 누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.
- 8) 시공시 실내온도는 20℃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, 20° 의 경우에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다.
- 9) 붙인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후 건조시 켜야 하며,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로 광내기마무리 한다.
- 10) 시공이 끝난후 통행이 빈번한 곳, 재료반입구등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아 충분히 보양한다.

12-2 천정판 붙이기

12-2-1 적용범위 : 실내마감표에 의한다.

12-2-2 견 본 품

재질, 무늬, 규격, 색상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.

12-2-3 시 공

- 1) M-BAR TYPE, CLIP-BAR TYPE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.

- 2) 절단은 전동식 절단식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,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줄질하여 평할하게 마무리한다.
- 3) 석고판의 이음 쪽매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.
- 4)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.

12-3 수장 재료는 색깔 및 광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.

12-4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.

12-5 조명기구,설비기구,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에 Ø 9 철제 환봉 또는 L-30X30X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,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.

제 13 장 철 거 공 사

13-1 본 지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
13-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.

13-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,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.

13-4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‘표준지방서’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.

13-5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철거할 경우 관할노동부에 허가를 득한 후,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철거하여야 한다.

13-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,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.

13-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, 전화, 가스, 수도,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.

13-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.

13-9 수서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13-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.